

2011년도 대전광역시 지원사업



장애인 인권위원회 지침서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인권위원 지침서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헌장

1998. 12. 3.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화·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침서를 발간하며...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4년에 설립되어 지역 장애인의 인권확보와 권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특히 2011년은 대전시청에서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을 위탁 받아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인권위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인권위원을 양성하기 위해 본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만족스러운 교재는 아니지만, 처음이라는 변명과 첫 발을 떼는 설레임을 함께 이 교재에 싣게 되었으며, 이 교재를 통해 인권위원의 인권관련 지식과 인권감수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교재를 발간하기 위해 흘린 땀방울들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교재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부인 '인권 바로알기'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권의 역사, 인권의 내용,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지킴이'의 내용으로 인권 전반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제 2부인 '장애인 인권 바로알기'에서는 '장애인 인권범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 장애인 인권침해의 유형과 사례'의 내용으로 장애인 인권의 차별과 그 유형을 다루었으며, 제 3부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와 유형,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차별의 시정과 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의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교재 발간을 위해 원고를 출판사에 맡기고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교재의 내용에 살이 점점 더 붙어 완벽한 교재가 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교재를 발간하는데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으로 변모하게 되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교재를 통한 지식의 습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장애인,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인권이 온전히 존중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두 오 균 소장

차례

장애인 인권위원 지침서

제1부 인권 바로알기	1
<hr/>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2
2. 인권의 역사	6
3. 인권의 내용	9
4.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12
5. 인권지킴이	15
제2부 장애인 인권 바로알기	18
<hr/>	
1. 장애인 인권범주	19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	24
3. 장애인 인권침해의 유형과 사례	26
제3부 장애인차별금지법	30
<hr/>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와 유형	31
2.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33
3. 차별의 시정과 구제	37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	39
부 록	43
<h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4

제1부 인권 바로알기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2. 인권의 역사
3. 인권의 내용
4.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5. 인권지킴이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권이란?

인권(Human Rights)이란 말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뭔가 알쏭달쏭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설명되지만, 이런 뻘한 설명으로는 인권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기 힘듭니다. 세상에 무수히 존재하는 권리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인권에 포함되는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듯 인권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권리(실정법상의 권리)도 아닙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뿌리로부터 자라난 사회적·역사적 산물, 곧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값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지만, 인권은 다른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존엄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더불어 옴터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을 권리의 체계로 구체화시킨 것은 근대시민혁명을 통해서였습니다. 권리의 체계란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 대상이라는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대시민혁명 이후 인권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까지 격상됩니다.

정말 누구나 인권의 주인이 될 수 있으나, 인권의 목록에 들어가야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특정한 조건에서 인권이 제한된다면 그 제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 인권의 주체와 내용, 범위를 둘러싼 긴장은 인권의 역사에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누구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권리가 누구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권리로 생각되기도 하고, 특권이 인권으로 위장하여 약자들에게 패악을 부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누구의 '입장'인가에 따라 인권을 해석하는 방향과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혼란과 긴장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 나침반 역할을 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前文)에는 인권을 아끼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종교와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지닌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인권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인류 공통의 기준으로 합의한 문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인권법의 모법(母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에 관한 중요한 기준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국제인권조약들과 선언들을 탄생시키는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권리” | 인권의 보편성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은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의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 중략)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과 회원국 관할권 아래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인 효과적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주인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인권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었던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보편성'은 허구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현실의 불평등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은 더욱 더 위력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인권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도 모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근거를 제공 해 주기 때문이지요.

보편성은 획일성과 다르다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곧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

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조건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외려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집 가까이에 학교가 있고 입학이 거부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이가 가진 장애를 고려하여 학교의 공간도, 교육 방식도, 교육 기자재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 수준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역차별이라고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평등을 일구기 위한 한시적인 우대 조치이기 때문에 차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인권이 진정 보편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과 맥락을 적극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권의 특징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 :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나옵니다. 여기서의 '타고난 존엄성'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 :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 :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인권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가 아니라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기본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린당하기 쉬운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강조됩니다.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 :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인권을 누릴 때, 나와 동일한 인간인 다른 사람의 인권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나의 인권은 사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권도 사회제도적으로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사회구성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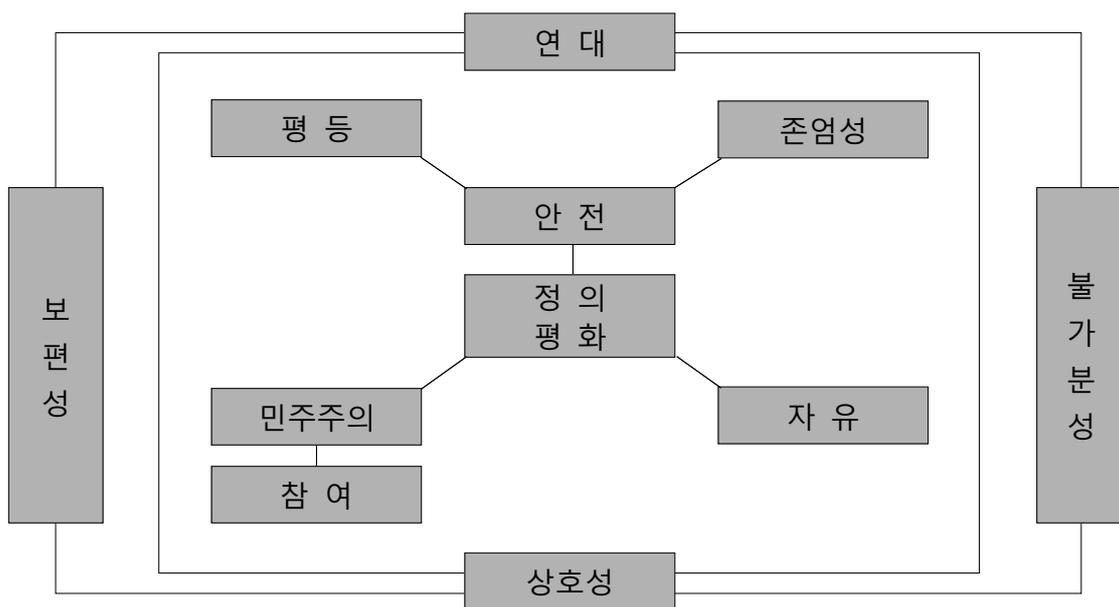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 : 인권은 단순히 한 인간의 권리로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권침해현상이 사회적 구조와 관련되거나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집단이나 사회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 국제적 불평등구조로 억압받는 제3세계나, 한 국가 내에서의 고통 받

는 소수집단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만 인권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공동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인권을 적용하는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이 인권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은 개인과 집단 간의 불가분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어 : 한 국가 내 국민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서 인간은 그 국가에서 실정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제한받고 살아갑니다. 인권은 이러한 제도적인 제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인권은 제도적 제한과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 평화,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권은 사회변화를 요구 : 인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때는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 사회의 변화를 함께 요구하게 됩니다. 즉, 인권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제도, 관습, 법률의 상위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의 범위 밖에 있는 제도나 법률, 관습에 대하여 도전을 통해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도록 사회가 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권의 사회변화 요구'에 기초하여 행해진 끊임없는 투쟁이 현재의 인권상태를 가능하게 한 것이며, 인권을 점점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인권은 한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인권의 기본적인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인권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rkey, Hugh(1992). "Teaching for Human Right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James Lynch, Celia Modgil and Susan Modgil (Eds), *Human Rights, Education and Global Responsibility*, The Falmaer Press. 126-127쪽 참고.

2

인권의 역사

인권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성장

학생의 인권, 여성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등 인권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권이란 말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인권(human rights)'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인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새로운 말입니다.

인권을 알기 전 인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전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권리가 보장되었을 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은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아닌 소수의 '특권'만이 보장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특권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생명을 위협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인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요. 인권이 잉태되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인간다움'을 보장받기 위해 특권에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갖가지 시련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의 탄생 - 근대시민혁명

근대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인권 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권은 목적이고 권력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념입니다.

19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체제에서는 오로지 지배를 당하는 입장이었던 국민이 인권의 소유자이자 권력의 원천이 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만 정부와 권력의 존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인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그 권력을 되찾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민은 정부가 인권 보장의 임무를 저버릴 때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로는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이념입니다.

인권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나 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독립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일정하게 부여받았다"라고 천명했으며,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신성한 여러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대시민혁명은 특히 재산권과 생명권, 자유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하였습니다. 구 체제에서는 국왕이나 귀족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빼앗곤 했으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사상이나 신앙, 의견 등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고 계약을 맺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발전하게 되고,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 - 사회권의 등장

근대시민혁명이 가져온 인권 보장 체계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혁명에 성공한 시민계급은 구시대의 지배계급처럼 자신들의 권리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시민계급은 경제활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옹호하면서 기타의 자유(사상·표현·신체의 자유 등)는 여러 법률로 제한하였으며, 노동자를 선거에 참여시키지 않는 제한선거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민중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민중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의 자유가 아닌 정신활동과 신체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인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압제에 대한 저항권(봉기)을 인정하는 것, 형식적인 대의제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등이 이들의 구상이었습니다. 시민계급과는 다른 의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고, 그 불을 끄기 위한 지배계급의 억압과 공세는 폭발적인 사회문제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배세력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지배계급과 자본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세력은 노동자에게도 어느 정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사회권'의 이름

으로 인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이르기까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 국가에서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인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과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정의의 원칙에 알맞게 제한하고, 노동자와 여성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며, 기본적인 생존을 누릴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노동의 권리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제구실을 하려면 인류는 아직도 더 먼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

인권이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걸 깨우쳐 준 것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나치가 유대인을 600여 만 명이나 학살한 사건은 "국내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에 기초하여 1945년 창설된 유엔(국제연합)은 '국제평화 유지'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을 목적으로 내걸었고, 그 첫 작업으로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제정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보장해야 할 인권의 내용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에도 유엔은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이 되는 '선언·협약·조약'을 많이 만들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은 한 나라 내부에서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은 국경은 초월한 전 인류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인권들입니다.

3

인권의 내용

인권은 변화 · 발전한다

오늘날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인권'이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인권에 속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대라면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행복 추구권이오."하고 답하고 나면 다시 침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챙길 수가 있겠죠. 경기의 규칙을 모르면 가만히 서 있다가도 퇴장 당할 수 있듯이,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나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의 항목은 '제2부 인권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권리는 퇴보하였고, 어떤 권리는 강화되었으며, 어떤 권리는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인권이 변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인권침해가 출현하고, 사람들의 대응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동성'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의 변화 속에 등장한 권리의 내용은 크게 1·2·3세대 인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세대'로 표현했다고 해서 순서대로 등장해 앞의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보완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세대 인권 - 자유권 혹은 시민 · 정치적 권리

봉건시대를 뒤로하고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한 '자유권'은 정치권력의 남용과 오용으로부터 각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권리들로 발전해 왔습니다.

- 차별로부터의 자유(2조)
-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3조)
- 노예나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4조)
-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5조)

- 자의적인 체포·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9조)
-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12조)
- 재산을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17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 의견·표현의 자유(19조)
-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조)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조) 등

2세대 인권 -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자유'가 의미를 가지려면 '자유'를 통해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보장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지배세력의 수용을 통해 인권에 새로 등장하게 된 권리들을 '사회권'이라 합니다.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역할과 달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다음의 권리들로 발전해 왔습니다.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 등(23조)
-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24조)
-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25조)
-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27조) 등

3세대 인권 -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

앞의 1·2세대의 권리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면, 3세대 인권은 집단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느꼈겠지만 인권의 성립과 발전에는 서구 사회가 중심역할을 했고, 오늘날의 인권에는 서구 사회의 인권관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인권 보장 체계를 세우는 동안 인류 구성원의 상당수가 속해 있는 제3세계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서구의 발전은 제3세계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제3세계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은 강대국의 식민지

였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경험에 더해 아프리카 사람들은 3백년 이상의 노예 생활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3세계의 대다수 민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착취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빈곤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세월을 되찾고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하여 제3세계 민중은 권력과 자원, 부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3세대 인권을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라고 부릅니다.

- **자결권** :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지구와 우주자원·과학·기술·기타 정보의 발전 결과, 문화적인 전통·유적·기념물 등의 인류 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4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 인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 명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모든 인권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고귀한 이상과 가치도 생겨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인권이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삶'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생명을 존중하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 의료 시설의 부족, 부적절한 보건정책 등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문제 삼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감별에 의한 고의적인 낙태,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 사형제도 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유'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노예나 예속 상태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체포나 구금·추방을 당하지 말아야 하고, 사생활이나 통신에 간섭받지 않아야 하고, 이동과 거주,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는 과정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평 등

미팅에 나가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학교는 어딜 나왔죠?”, “믿는 종교는 있나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소위 ‘호구조사’에 해당하는 질문들인데, 간단해 보이는 이런 질문 하나 하나가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하지만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종교, 피부색, 빈부’ 등의 차이를 이유로 갖가지 차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끼치는 해악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차별 받는 사람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온전하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에는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인종차별 등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차별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이미 있는 차별에 대해서나 새롭게 등장하는 불평등 요소에 대해서나 촉각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정 의

모든 사람이 골고루 권리를 누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권은 ‘정의’를 늘 고려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의 재분배를 꾀하는 것, 누구나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마련하는 것 등이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이 도모하는 일입니다.

‘자유권’의 내용 중에서 법을 어긴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아야 한다는 원칙,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교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인간적인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등은 ‘사법정의’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책임 · 연대

굶주려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살던 집과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에 확 띄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제들, 가령 빈곤이나 실업, 차별과 편견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인권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고통 받는 사람들 또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 주장하고, 그들을 돕는 ‘연대’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권리를 침해당

한 사람들의 '고립'을 막고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실천은 인권의 존재 근거가 됩니다.

평 화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해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쟁이나 폭력', '억압이나 강요'인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추구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권은 서로의 다른 점, 즉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추구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사라져 가고, 공기도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식물과 동물이 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열대 우림의 55%가 이미 사라졌고, 매년 2만 7천여 종이 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하루에 74개종이, 1시간마다 3개종이 멸종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하버드 대학 생물학자 E.O.Wilson의 추정). 그 결과 전 세계는 환경문제와 기상이변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수많은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지구상에 같이 존재하는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일은 전 인류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5

인권지킴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실천

“내 권리도 못 챙기는데 남의 권리는 무슨…….”

“인권 지킴이 활동이란 아주 소신 있고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나 같은 보통사람은 할 일이 없어.”

“나는 규칙이란 걸 아주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니까 인권 문제랑 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나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미 있는 인권도 보장 받을 수 없을뿐더러 발전 같은 건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전혀 인권에 관심 없던 사람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것이고, 또한 자기 권리가 뭔지 모르므로 일방적으로 피해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쪽에서 “당신에겐 이런 권리가 있소”라고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또한 인권의 잣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아주 손쉽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그럼,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나 행동이 저절로 생겨나 발휘될 수 있을까요? 며칠 밤을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일처럼 해낼 수는 없겠지요. 꾸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훈련을 해야 할까요?

‘인권에 대해 아는 것’ 이 필요

우선 ‘인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권의 개념과 내용**
- **서로의 인권을 골고루 보장받기 위해 각 사람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범위**
- **성차별, 장애인 차별, 지역주의, 인종주의 등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하는 유형과 실태**

- **인권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 운동, 조직 및 인물,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권을 위한 투쟁**
- **세계인권선언,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등 인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선언과 국제인권조약**
- **헌법을 비롯하여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한 국내법과 제도**

생활 속에서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한 기술을 닦아야

말과 글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기술 : 불만을 가진 채 뒤에서 웅얼거리기만 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분풀이를 한다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리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의견을 잘 듣고 토론하는 기술 : 토론할 때는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주장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조용히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차별이나 지역차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용히 경청하고 넘어가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제점을 발견하여 토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술 : 다양한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계는 '짱'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는 받아들이고 합의에 기초한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 인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상대방을 억압하고 좌지우지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이 있을 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 책임질 줄 아는 자세,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국내외의 인권보장제도와 기구를 활용하는 기술 :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를 담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직접 띄워 본다거나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기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써먹는 사람이 없으면 간판만 달아놓고 하는 일이 없는 형식적인 제도와 기구가 되기 쉬운데니까요.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해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기구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대중매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근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기술,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하는 기술, 대중매체 등에 담겨 있는 편견·고정관념·차별 등을 가려내는 기술 등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들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해야 서로 서로 챙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더디더라도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 이런 값진 기술을 갖춘 인권 지킴이가 되어 봅시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각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권에 대한 지식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 또한 시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배우기 어려운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에서만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만이 말할 수 있고 학생은 듣기만 해야 하는 교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사소한 차이로 친구를 따돌리는 태도 속에서는 인권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인권교육이 중요하면서도 실천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환경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자신의 인권을 찾고 싶고 인권을 존중하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어우러져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담긴 수많은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되짚어 보고 분석하는 가운데 서로에게서 배워 봅시다. 인권의식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는 활동의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 각 사람은 서로의 교과서입니다.

제2부 장애인 인권 바로알기

1. 장애인 인권범주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
3. 장애인 인권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장애인 인권법주

생존권

상당수의 장애인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37.1%¹⁾로 절대 소득액이 극히 낮습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노동능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인의 경우 대상자격에 있어 적극 수용해야 하고, 장애인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각종 수당제도를 통한 장애인의 생계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업 환경이 좋은 편인데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장애인 복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차원의 장애인 전용공장 설립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합리적인 기업가가 아니면 생산성이나 능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꺼립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견의 극명한 예가 있습니다. 언젠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6명의 장애인 연수생들이 판사를 지망하였습니다. 당시 인사권자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용을 거절하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장애인이 절룩거리며 법정에서 들어서게 되면 법정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판사임용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이 더욱 곤란해 지는 것입니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을 조사한 결과 50만원 미만이 12.3%, 50만원~99만원 24.8%, 100만원~149만원 16.3%, 150만원~199만원 11.2%, 200만원~249만원 10.4%, 250만원~299만원 5.9%, 300만원~349만원 6.3%, 350만원~399만원 4.1%, 400만원~499만원 4.1%, 500만원 이상 4.4%로 조사되었다.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권리에 속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교육권입니다. 그런데 새삼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권을 강조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일반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배치 해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권

최근 적극적인 권리개념으로 건강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건강권이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일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조성, 자율성 보장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입을 정도의 사고나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육권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물질, 정신적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지적장애아를 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을 가지기가 매우 힘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아니면 하루 중 일정시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볼 수 없을 환경에 처해 있거나, 장애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접근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



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가 주어진 명시된 법이 있으나, 우리 사회 환경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의 가능성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거주이전권

장애인에게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그 시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데려가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시설에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 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생활시설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거주이주권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거주이주권이 가능하려면 집을 빌리는데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시설의 경우 소규모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운영에 지역인사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거주이전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향유권

장애인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고, 문화와 레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공되는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문화적 생활은 많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렵습니다. 이것은 방송매체, 문학, 교육장비, 문화시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장치, 정보 등에 적용됩니다. 단적인 예로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점자와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된 인쇄물, 이야기책 등의 서비스를 받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화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화비디오로 공급해야 하고, 매일 TV 뉴스는 수화나 자막처리가 필요하지만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문화와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회 물리적인 환경이 원인이 되었던, 생계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아 문화나 여가생활은 아직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치로 생각해서든 어쨌든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원활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확보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은 물론 각종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장애인과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문화향유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동권

장애인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그 불편은 상당합니다. 학교를 혼자서 다니기도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조차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고, 원활하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없어서 계속해서 수학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저상버스 도입 대수를 늘리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설비를 갖춰야겠고, 택시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활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복지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인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지방정부별 특별 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보접근권

정보는 숨 쉬는 것과 같은 만큼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정보 없이 살아가려면 차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운행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소외계층의 경우,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 더 정보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는 정보접근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과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행권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은 인도환경을 엉망인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에게 있어 인도(人道)는 단지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위험지역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마음 놓고 걸을 권리조차 막혀 있어 보행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권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과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보접근이 막혀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후보자 선택에 있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을 지적장애인 부모들은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정권 실현은 선거권이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이 누리는 참정권을 장애인들에게는 공평하게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권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우리 전통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에서 늘 멀리 당하고 소외당한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차흥봉, 1993).

전통사회의 장애인관을 엿볼 수 있는 각종 호칭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부르는 끝말이 '이'나 '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것은 장애인을 경멸의 대상으로 표현한 각종 속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안태윤, 1969, 이규태, 1981)²⁾.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문제에 부딪히면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회복지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재(人災)로 보지 않는 우리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과 함께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이 계속되어 장애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이경동, 1985). 이러한 것들을 종합 해 볼 때, 한국의 장애인관은 약자무시(弱者無視)의 전근대적인 사회적 관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태윤, 1969).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비장애인의 주관적인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강경선, 1989).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대 의학적 인간학의 통찰입니다(태교훈, 1988).

장애인 차별의 원인, 불평등(不平等)

한국사회에서 '장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장애인은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

2) 우리나라의 속담 중 장애인에 대한 속담의 분포는 맹인에 관한 것이 48개, 병신이 7개, 앓은뱅이가 6개, 귀머거리가 5개, 언청이가 5개, 미친이(狂)가 4개, 곰배팔이가 1개, 바보가 1개, 뽕정다리가 1개로 되어 있다고 조사한 바 있다.

- 자유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으로 간주되는 현실
- 종교적이거나 전통적인 관습에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

본 서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을 찾는다면 그 원인을 '불평등(不平等)'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³⁾.

장애인 인권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에 기초해서 찾아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근거는 없으나 실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차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평등현상과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하지 않은 사실에 있어서의 대립
- 언어상의 대립
- 태도상의 대립

이렇게 불평등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형태의 대립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 결과는 '부정적 차별(否定的 差別)'로 나타납니다.

3) W.James는 평등문제에 관해서 서로 의견의 대립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사실에 있어서의 대립, 태도에 있어서의 대립, 언어에 있어서의 대립 중 불평등에 대한 원인이 어느 것에 기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불평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

장애인 인권침해의 유형과 사례

생활환경

장애인은 신체적 손상과 기능장애로 인한 교통, 통신설비, 공공건물, 도로 이용 등의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장벽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제한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차별사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식당에 밥맛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게 함
-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타면 바쁜 시간에 탄다고 핀잔을 줌
- 목욕탕에 갔을 때 다치면 누구 책임이냐며 오는 것을 꺼려해 한동안 가지 못함
- 경찰서, 파출소에서 수화통역사를 대동하여 오라는 불친절한 행동과 면박을 받음
- 지하철 이용 시 무료승차권을 동냥 주듯이 던짐

직업생활

우리 사회에서 직업생활에 있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던 경험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생활에 있어서 차별경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 면에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차별 대우를 받음
- 장시간 일을 했음에도 작업량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음
- 일반 회사 취업 시 끊임없이 눈치를 주어 그만 두게 함
- 취업 면접 시 능력이 있음에도 무조건 거절당함
- 아르바이트 시 주인이 처음에는 장애인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며칠 후에 알고 나서는 손님들이 보기에 안 좋다며 해고함



주거생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을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집값을 부당하게 높게 지불한 경험을 한 경우도 있고, 주택 개조 시 주인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친목활동에 있어 의도적으로 배제를 받은 경험이 많이 있고, 공동주택에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주거 생활에 있어서의 차별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절함
- 동네 단합대회 같은 행사에 의도적으로 제외시킴
- 반상회에 서로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함
-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다고 하여 동네에서 이사 가라고 함
- 이웃에서 빈정대고, 옆에 있는데도 협담을 하는 등 따돌림을 당함

의료시설 이용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 청각 장애인 등 비교적 장애가 심한 경우에 의료시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치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을 이용함에 있어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병원 치료받을 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에 대해 대충 진단을 내려 오진을 받은 적이 있음
- 치과, 이비인후과 이용 시 뇌병변장애인이라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함
- 장애인이란 이유로 진료보다 진료비납부를 먼저 요구받은 경험이 있음
- 보건소에서 감기에 걸려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간호사가 앞도 안보이면서 혼자 다닌다며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진료를 해준다고 하여 아주 불쾌한 경험이 있음
- 진료차례가 되어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진료하게 하여 장시간 기다림

교육환경

법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러 형태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직·간접적인 교육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소위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습니다.

- 특수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모르는 교사가 있어 수업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대학 시험 시 지체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의대 입학 거부사례
- 일반학교 입학 거부, 특수학교 진학 강요
- 장애학생의 진로지도에 대해 무성의와 무관심을 보임
- 선생님들이 일반학급 아이들과 특수학급 아이를 차별함

가족생활

가족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보호태도를 보이거나 이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과보호로 인해 자립기회를 주지 않거나 가족 행사 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형제 결혼 시 상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인사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의 혼사 문제 시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파혼된 적이 있음
- 형제들의 결혼 시 상대방 가족들에게 인사를 못함
- 가족 외출 시 장애인 자녀만 제외시킴
- 외식하러 갈 때 가끔 장애인 모르게 가는 적이 있음

문화, 체육 생활

장애인이 문화생활을 운운하면 '별 요구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반되는 문화, 여가활동에 있어 장애인만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관, 연극장 등의 관람시설 및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미비, 수영장 등 체육시설 미비 그리고 어떻게 장애인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비장애인들의 태도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은 문화, 체육생활에 있어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수영장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강습을 받지 못함
- 청각장애인인데 우리나라 영화는 자막처리가 되지 않아 외화만 보게 됨
-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에 출입할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객으로 보지 않고, 구걸하러 온 사람으로 오인 받은 적이 있음



공공기관이나 선거에서의 차별

가장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부문에 해당함에도 적지 않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리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차별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이용 시 본인이어도 보호자가 대동해야 문서를 떼어 줌
- 관공서 직원 및 경찰관들의 몰이해와 불친절
- 해당부서가 2층에 있어서 담당자와 상담이 어려운 경우
- 선거 시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선거권에 대해 무시당함
- 투표장소가 2층이라 투표하러 가는데 지장이 많음

여성장애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심정이냐는 질문에 80.9%의 여성장애인이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를 바라지만 결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은 최악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시댁 식구들이 가끔 말을 빈정댐
-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모두 내 탓으로 돌림
- 아이를 낳을 때 혹 유전이 될까봐 가족들로부터 약간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음
-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경우 불임 수술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

기 타

과거에는 주로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발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덮어두기 보다는 장애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자유권에는 인권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시각장애 학생 대학입학 거부사례, 보험차별, 수용시설 내에서의 각종 인권 침해 사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우리 사회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3부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와 유형
2.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3. 차별의 시정과 구제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의 네 가지 유형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사에서 '신체건강, 용모단정' 등 사무직 직원 채용 자격 조건을 보고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응시한 장애인에게,
 - "자격이 안됩니다! 몸도 불편한데 집에서 쉬지 그래요?"
 - "정상인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 (※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인의 반대말은 비정상인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장애 유무일 뿐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회사 이미지 나쁘게끔, 장애인 주제에 감히 어딜…… 등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험 평가를 실시하면서 응시생 전원에게 평가 시간에 대해 "예외는 없다"라는 규정을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
 - 토끼와 거북이가 육지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경기를 하면 → 거북이가 불리
 - 토끼와 거북이가 물속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경기를 하면 → 토끼가 불리

정당한 편의⁴⁾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관 정문을 계단으로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경사로 등을 미설치 하거나 정문보다는 후문 등에 설치하여 출입을 함에 있어 곤란하게 하는 것 등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 광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불우한 이웃의 느낌을 들도록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불쌍하다, 도와줘야 한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것
- 보도 또는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번 화재사건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추측보도하면서 정신이상자와 장애인을 혼동 해 이웃에 있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배제 또는 거부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등

4)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2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고 용 (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정년·퇴직 등)에서 차별금지
- 채용 시 장애 여부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지도 매뉴얼, 참고자료의 변경,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훈련에 있어서 편의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 및 보조인 배치

교 육 (제13조, 제14조)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 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입학 및 전학 강요·거부 금지
- 수업, 실험, 수학여행 등 교내외 활동의 제한·배제·거부 금지
- 교육활동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시 교육 보조인력 배치
- 통학 및 교육기관 내 이동 등 편의시설 제공
- 장애인보조기구 비치 및 의사소통수단 제공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제17조)

장애인이 토지·건물의 매매와 임대, 금전대출 및 신용카드의 발급 등 재화와 서비스 이



용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 안 됩니다.

- 미래를 위해 누구나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장애가 있으면 회피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제18조)

장애인이나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리가 없다'고 거부하거나 출입을 금지

이동 및 교통수단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건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택시 승차 시 방향이 달라 승차를 거부하거나 요금을 더 내도록 하는 행위
- 시각장애인 보조건을 애완견으로 간주하고 버스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정보 접근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제20조, 제21조)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을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국경일 및 주요한 행사에 수화통역사 없이 행사를 진행
-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리로 읽어주는 음성안내 서비스 미제공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제24조, 제25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여 보호자와 관람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소리 나는 축구공 또는 보조자를 제공하고, 점자안내책자 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제26조, 제27조)

해당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식 또는 문서확대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을 해야 함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 제29조)

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 임신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불임수술을 권유
- 아이를 양육하는데 힘들고 어렵다면서 입양을 권유

가족, 가정, 복지시설 (제30조)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복지시설을 최신형으로 개·보수 또는 신축하였을 때 언론 매체에서 사진 촬영 시 장애인의 모습을 허락없이 공개

건강권 (제31조)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와 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임신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무조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장애인 수술비 등은 선불이라고 함

괴롭힘의 금지 (제32조)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시각장애인의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 “심봉사! 눈에 보이는 게 없구먼!, 눈 뜬 장님이 따로 없다니깐!” 등의 모욕·비하발언을 함**

(※ ‘장님, 맹인, 봉사’ 등의 단어는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또한 청각, 언어 장애인을 ‘귀머거리, 병어리’ 등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장애여성, 장애아동 (제33조, 제35조)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고용 등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일하는 장애 여성은 직장 보육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및 훈련 등의 기회박탈과 착취, 학대,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편견으로 가정에 방치 또는 감금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 함**

정신적 장애인 (제37조)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 **장애인 사촌 명의로 핸드폰을 마련하고, 요금도 사촌에게 전가하는 등 장애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3

차별의 시정과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하며,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 및 당사자 간 조정 또는 구제조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가능하고(제38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제39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두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조).

법무부 장관 -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차별시정기구의 기능 및 권한 가운데,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시정요구·명령 제도와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권의 도입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보수진영의 강경한 반대에 밀려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었고(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시정권고권 정도로 제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별시정기구의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일원화라고 하는 정부 정책과 독립된 장애인차별금지및시정위원회 설치, 시정기구의 기능 및 권한 강화(특히, 시정명령과 이행강제)라는 민간단체의 입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과 정부 여당의 확대당정회의를 거치면서 '시정기구 일원화 - 시정기구 이원화'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과 과태료 부과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차별받은 장애인



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권과 과태료 부과권이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장(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제46조 내지 제49조), ①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임시구제조치(제48조), ② 장애를 이유로 차별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제46조), ③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원고와 피고 간에 입증책임의 분배(제47조), 그리고 ④ 형사처벌(제49조)이 그것입니다.

<표 1>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조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 행위,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및시정위원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힘 있는 기구, 독립성과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권을,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司法)적인 권리 구제 방법 :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 받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입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의 손해를 그대로 전보 해 주는 전보배상의 법리⁵⁾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실제로는 정신적인 손해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손해를 입증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입증한다고 해도 소액에 그치게 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될 것이고, 가해자는 패소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위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어서 여전히 법률 위반행위를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손배상이나 전보배상의 법리를 뛰어 넘어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금액의 한도를 입증액의 2~5배로 한다거나 배상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단소송제도의 제한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소액 다수자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⁶⁾를 도입하되 적용 대상을 중요한 몇 가지 차별금지 및 손해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대상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5)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 실손배상
 6) 매우 적은 숫자의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 잠재적인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 소송을 승소나 합의로 이끈 후에는 불특정 다수가 판결액이나 합의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민간 및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실효성 확보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만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장에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밖에 재화와 용역, 문화, 사법, 참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래를 내다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법제도를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홍보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홍보 및 교육, 진정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 및 단체들이 일상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여러 방법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발굴·적용 : 교육·홍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 사례들을 발굴해 내고, 법무부 장관을 통한 구제(시정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제(법원의 임시조치, 손해배상, 처벌 등)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기획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모니터링 :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모니터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당사자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고, 이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며, 모니터링의 대상으로는 차별의 실태와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 입법기관 및 정부의 활동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P&A 시스템 : P&A 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이란, 미국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나라에서 시설 또는 지역사회에서 학대나 방임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스템인데, 주로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되, 그와 독립하여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고 공익소송 등 법률지원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된 민간단체들에게 조사권한, 보호·구제조치권, 제소권 등을 주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P&A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시정기구의 활성화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 가는데, 진정사건 처리 속도는 느리기만 하니, 어느 세월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에 접수되는 진정 및 상담 건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고, 각 지역의 인권취약계층을 위하여 그 역할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되면서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인원 조직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역사무소 또한 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통하여 전문성, 감수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수호기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시정명령심의위원회 또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도 적합한 사례를 발굴하여 피해자를 통해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시정명령권 발동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개정

우선 편의증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내용이 대폭 수용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증진법에 없는 인적 서비스와 설비 및 도구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가 차별에 해당하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에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관련 법률들을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신법(新法)이요, 장애인 인권 관련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합당하게 관련 법률들을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상충되는 개별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상승 작용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나, 위 협약의 근본 취지를 국내 실정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되지 못한 내용을 국내 법 체계 및 재판 실무에 반영할 것인가가 숙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위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에 상승 작용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 고 문 헌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0). 장애인 법률, 그 비판과 전망. 서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서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0). 장애인 인권 지침서. 서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강경선 (1989). 장애인문제에 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 복지법제, 법무자료 제112집.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장애인 실태조사.
- 안태윤 (1969). 한국인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논문집 제2집.
- 이경동 (1985). 우리 나라의 장애자복지에 관한 사적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규태 (1981).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차흥봉 (1993). 역사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복지이념과 사회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심포지엄.
- 태교훈 (1988). 철학적 인간학에서 본 정신건강의 의미. 실학전망 제81호.

부 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11] [법률 제10280호, 2010. 5.11,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

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차 별 금 지

제 1 절 고 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교 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 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제목개정 2010.5.11]



[시행일 : 2011.5.12] 제21조제4항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 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 5 절 모 · 부성권, 성 등

제28조(모 · 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 · 출산 · 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 ·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 · 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 출산 · 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 교육 · 지원 ·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 · 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 ·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 6 절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 · 가정 ·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 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3 장 장애인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 5 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멸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 6 장 별 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 칙 <제10280호, 2010. 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 인권위원 자료집

발행일 : 2011년 3월

편집 : 임석식, 김전홍, 김나리

펴낸이 : 두오균

역은이 :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06-5번지 온누리빌딩 3층 (300-815)

전화 : 042-672-1479

전송 : 042-672-1484

홈페이지 : www.djcowalk.or.kr

인쇄처 : 예림기획 (042-257-3500)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00-815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6-5 온누리빌딩 3층
Tel. (042)672-1479 Fax. (042)672-1484 www.djcowalk.or.kr